



제311회 임시회

2012.06.13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병학 교육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2년 6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(사립학교 포함) 교직원으로 함(안 제2조).

나. 상담내용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며, 상담 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고, 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.

다.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)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유지를 하도록 한 것으로,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 사안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교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양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관계 법령 발췌

없음